의안번호	제 759 호
의 결	년 월 일
연월일	(제 회)

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

제 안 자	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장
제안연월일	2021년 6월 22일

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

의안 번호

759

제안연월일: 2021. 6. 22.

제안자 :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

위원장

1. 주문

O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1년 6월 30일에서 2022년 5월 31일까지 11개월 연장하고자 함.

2. 제안이유

- 수도권집중화와 지방소멸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도의회의 지속적인 관심·지원과 정책대안 제시가 필요함.
- 도민들의 균형발전에 대한 목소리를 들어 국가정책과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,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추진에 따른 충북의 발전방향을 모색
- 도내에서 상대적으로 저발전한 남부권역과 북부권역의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, 지난 5년간 입법화되지 못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의 입법을 위한 지원활동 강화

3. 참고사항

O 관계법령 : 붙임

관계법령 발췌

□ 특별위원회 구성

[지방자치법]

제56조(위원회의 설치)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.

[지방자치법 시행령]

제56조(특별위원회의 설치)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.

[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]

제35조(특별위원회)① 의회는 특별히 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□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

[지방자치법 시행령]

제56조(특별위원회의 설치)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